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로구 제2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김인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영양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고(高)당류 간식의 유행에 따른 당류 과다섭취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영양 식생활 관리사업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제1항에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영양·식생활 관리사업을 추가하여 정보통신기술 기반 건강관리사업을 영양관리사업의 범주로 포함하였습니다.

제11조제3항을 신설하여 시민이 해당 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활동비, 상품권 또는 물품 등 보상 지급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보상 지급의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정하도록 하여 행정의 탄력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식생활 영양관련 대시민 정책이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에 실천으로 적용되어 보다 건강한 서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